

증빙서류 참고사항

※모든 제출 서류는 **반드시 원본**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

제출서류	특이사항	비고	
<직업.학력.경력에 관한 사항>			
이력서	본인이 작성 후 제출		
졸업증명서	대학교 이상 : 반드시 원본으로 발급받아 제출(학사, 석사, 박사 등) (고등학교졸업증명서 : 선택사항)	해당 학교	
재직증명서	직장에서 반드시 원본으로 발급받아 제출(무직인 경우 제외)	재직기관	
경력증명서	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 * 실제 재직기간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. 본인이 당시에 받았던 임명장이나 위촉장 제출 불가	해당 기관	
<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> - 본인, 배우자(혼인기간 중 복무 마친 남성限) 및 본인의 직계비속(남성)			
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	본인이 작성 후 제출		
본인및직계비속의 병역사항	본인이 작성 후 제출		
병적증명서/복무확인서	지방병무청에서 발급(동사무소에서 가능. 단, 몇 시간 걸릴 수 있음) •병적증명서(원본) : 공직자신고용 으로 발급 •복무확인서(원본) : 복무기관에서 발급	각각 지방병무청/복무기관	
주민등록등·초본/가족관계증명서	•주민등록등·초본(원본) : 후보자 본인, 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•가족관계증명서(원본) : 후보자 본인	동주민센터, 시군구청	
<최근 5년간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> - 본인, 발급 가능한 최근 5년치			
소득세 관련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+ 소득금액증명	<p>【납세사실이 있는 경우】</p> <p>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+ 소득금액증명(원본)</p> <p>※ 당해 연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(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) 첨부</p> <p>※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: 소득금액증명에 나타나지 않은 각종 소득공제 내역이 나타나므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천징수영수증 : 재직기관 • 그 외 : 세무서
	사실증명 (납세사실이 없을 때)	<p>【납세사실이 없는 경우】</p> <p>•사실증명(원본) : “2020년~2024년 현재 귀속 종합소득세 및 사업·근로·종교인·연금 소득 신고사실 없음” 명시하여 발급</p> <p>※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 반드시 제출</p>	
국세 관련	납부내역증명	<p>납부내역증명(원본)</p> <p>【납세사실이 있는 경우】: 종합부동산세,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 내역 발급 【납세사실이 없는 경우】: “2021년~2026년 현재까지 납부내역이 없음” 명시하여 발급</p>	
지방세 관련	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(5년간 주소지별, 과세물건지별 개별 발급)	<p>지방세 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서(원본)</p> <p>【납세사실이 있는 경우】: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자동차세등 지방세 납부 내역 발급</p> <p>※ 현 주소지와 물건소재지·前 주소지(최근 5년 이내) 시·군·구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각 시·군·구의 최근 5년치 납부실적을 모두 발급받아야 함. → 현 주소지 동주민센터(시군구청)에서 다른 지방 자료도 발급 가능</p> <p>【추가 제출서류】: 과세사실이 없는 지역 각각에 대하여 “2021년~2026년 현재 까지 과세사실 없음” 명시하여 발급</p>	동주민센터 시군구청
국세체납	납세증명서	후보자 본인에 대한 서류 제출	세무서
지방세체납	지방세납세증명서	후보자 본인에 대한 서류 제출	동주민센터 시군구청

<상임위원 후보 대상>

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작성요령

1. 본인과의 관계

-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성명은 기재하지 아니하고, 본인과의 관계만 기재한다.
 - 본인·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 순으로 기재
 - 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·비속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실을 명시
 - ※ 직계비속 중 혼인한 딸은 제외

2. 재산의 종류

- 재산의 소유자별로 토지, 건물,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, 동산,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, 가상자산의 순으로 기재
- 토지
 - 임야/전/답/대지/잡종지 등을 기재
- 건물
 - 아파트/연립주택/단독주택/상가/빌딩/오피스텔/사무실 등을 기재
 - ※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기재함
-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·건설기계·선박 및 항공기
 - 광업권·어업권·자동차·항공기·선박·건설기계 등을 기재
- 동산
 - 현금·수표·예금(파생상품증거금 포함)
 - 증권 : 주식·국채·공채·회사채·백지신탁·주식매수선택권 등을 기재
 - 채권·채무
 - 금·백금·보석류
 - 골동품·예술품 : 도자기·서양화·동양화·서예·공예·수예·조각·칠기 등을 기재
 - 회원권 : 골프회원권·헬스회원권·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기재
 - 지식재산권 : 특허권·실용신안권·의장권·상표권·저작권 등을 기재
 - 합명·합자·유한회사의 출자지분
-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
- 가상자산

3. 소재지·면적 등 권리명세 및 가액

- ※ “등록대상재산신고서”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, 다음 사항에 유의
- 예금 : 예탁기관별로 예금의 합계액을 기재
- 증권 : 개인별·종목별로 합계액을 기재
- 합명·합자·유한회사의 출자지분
 - 회사명·출자금액·지분비율 및 등록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기재
-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
 - 법인명·출연재산·보유직위를 기재

※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, 지식재산권,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.